

春塘臺試와 儒生庭試 · 觀武才의 관계

이강욱*

〈目次〉

- I. 머리말
- II. 春塘臺文科와 儒生庭試의 관계
- III. 春塘臺武科와 觀武才의 관계
- IV. 맺음말

[국문요약]

春塘臺試는 大科의 하나이지만,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春塘臺試 중 春塘臺文科만 「禮典」에 수록되어 있고 春塘臺武科는 「兵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춘당대시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나는 觀武才나 別試才를 시행할 때 유생정시를 그 對舉試로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런 때에는 유생정시가 춘당대문과가 되고 관무재나 별시재가 춘당대무과가 되었다. 또 하나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舉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시를 春塘臺庭試라고 불렀다.

『國朝榜目』에는 총 21회의 춘당대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榜目 및 『試藝臚錄』·『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와 대조한 결과 춘당대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3회이고, 춘당대시로 확인된 것이 18회이며, 18회 중 1회는 무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18회의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로 시행된 것이 14회<77.8%>이고 춘당대정시문과로 시행된 것이 4회<22.2%>였다. 17회의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로 시행된 것이 12회<70.6%>이고, 춘당대정시무과로 시행된 것이 4회<23.5%>이며, 별시재로 시행된 것이 1회<5.9%>였다.

춘당대문과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경우와 춘당대정시의 문과를 시행한 경우로 나뉘었다. 유생정시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되는 경우 이외에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라야 춘당대문과가 되었다. 춘당대정시문과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舉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시행할 때의 문과를 가리켰다.

* 은대학당장.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로 시행된 경우, 별시재로 시행된 경우, 춘당대정시의 무과로 시행된 경우로 나뉘었다. 『속대전』에서는 관무재가 무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龍榜과 虎榜을 갖춘 경우’라고 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나 문신정시를 돌아가면서 대거시로 시행하였는데, ‘龍榜과 虎榜을 갖춘 경우’란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여 文科榜目과 武科榜目이 갖추어진 경우를 가리켰다. 별시재는 관무재에 비해 간소하게 시행되던 과시로, 대부분 대거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 4년(1728)에는 예외적으로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숙종 대에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이었다. 춘당대정시무과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擧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시행할 때의 무과를 가리켰다. 춘당대무과는 이처럼 다양한 명목으로 시행되고 그 명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춘당대무과’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어: 春塘臺試, 觀武才, 別試才, 儒生庭試, 文臣庭試, 對擧試, 龍榜, 虎榜.

I. 머리말

『經國大典』을 비롯한 조선시대 법전의 「禮典」과 「兵典」에는 다수의 科試가 수록되어 있다.¹⁾ 그중 雜科를 제외하면 「예전」에는 文官이나 儒生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文試가 수록되어 있고, 「병전」에는 武官이나 武士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武試가 수록되어 있다.²⁾ 문시 중 문관으로 임용될 자격을 부여하는 科試를 文科라 불렀고, 무시 중 무관으로 임용될 자격을 부여하는 科試

1) 茶山 丁若鏞은 ‘科는 기예의 우열을 분류하여 등급의 차례를 매기는 것을 말하고 擧는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발탁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夫科者, 分其技藝次其等第之謂也; 擧者, 薦其才能資其拔擢之謂也.]’라고 하고, 당시 조선시대에는 ‘科’만 있고 ‘擧’는 없다고 비판하였다. 다산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科’이고 천거에 의한 선발은 ‘擧’라고 구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본고에서도 가능한 科擧보다 科試라는 어휘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與猶堂全書』 「詩文集」 文集 辭正言兼陳科弊疏.

2) 文試란 文官 또는 문관이 되려는 유생 등이 응시하던 모든 科試를 의미하고, 武試란 武官 또는 무관이 되려는 閑居과 軍兵 등이 응시하던 모든 科試를 의미한다. 文科와 武科는 小科와 상대적인 개념인 大科를 가리키고, 소과와 대과에 속하지 않는 科試도 다양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문시와 무시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성무는 조선시대의 科試를 文科, 武科, 雜科, 生員進士試로 나누었다. 이성무, 개정증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113쪽.

를 武科라 불렀다. 문과와 무과를 아울러 大科라고 불렀고,³⁾ 대과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及第를 인정하는 紅牌를 발급하였다.

법전에 수록된 문과와 무과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科試와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던 科試로 나뉘었다. 式年試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정기시였고, 增廣試·別試·庭試·謁聖試·春塘臺試는 국가에 경사 등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던 비정기시였다.⁴⁾ 『大典通編』에 수록된 대과를 분류하면, 식년시는 式年文科와 式年武科, 증광시는 增廣文科와 增廣武科, 별시는 別試文科와 別試武科, 정시는 庭試文科와 庭試武科, 알성시는 謁聖文科와 謁聖武科로 각각 나누었고, 그중 문과는 「예진」에, 무과는 「병진」에 수록하였다. 그런데 춘당대시만 유독 春塘臺文科는 「예진」에 수록되어 있으나 春塘臺武科는 「병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전통편』보다 1년 뒤인 정조 10년(1786)에 편찬된 『典律通補』에도 「예진」에는 춘당대문과가 수록되어 있으나 「병진」에는 춘당대무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법전에 춘당대무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춘당대시는 춘당대문과만 시행하고 춘당대무과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續大典』 「禮典」 諸科와 『진율통보』 「예진」 제과에 다른 대과와 마찬가지로 춘당대시도 문과와 무과를 함께 시행한다는 명문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武科榜目에도 춘당대무과의 급제자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춘당대무과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법전에 춘당대무과를 다른 이름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3) 이미 及第한 文官과 武官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하던 科試인 重試도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나, 유생과 한량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科試가 아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大科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外方別科는 外方別試나 道科라고도 하며, 重臣을 파견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試才御史를 파견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중신을 파견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선발된 유생과 무사에게 급제의 자격을 주었다. 따라서 중신을 파견하여 시행한 외방별과도 대과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科試가 아닌 일부 지방에 한정하여 시행한 科試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대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續大典』 「禮典」 諸科.

다. 법전에 춘당대무과를 다른 이름으로 수록하였다면, 이름은 다르게 기록되었더라도 대과이기 때문에 급제의 자격을 주기 위한 殿試가 수록된 科試라야 그러한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거론한 대과 이외에 전시를 시행하는 무과가 있는지를 법전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속대전』 「병전」 試取에서는 觀武才를 무과의 하나로 거론하였고, 『대전통편』 「병전」 試取와 『전율통보』 「병전」 시취에는 모두 觀武才 조항에 전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⁵⁾ 그렇다면 관무재가 춘당대무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전에는 관무재를 시행할 때 文臣庭試나 儒生庭試를 돌아가면서 對舉試로 시행하도록 하였다.⁶⁾ 대거시란 특정 科試를 시행할 때 그 科試와 짝을 이루어 함께 시행하던 科試를 가리켰다. 예를 들면 10년마다 정기적으로 重試를 시행할 때 別試나 庭試를 함께 시행하거나 무시인 관무재를 시행할 때 문시인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를 함께 시행하였는데, 이때의 정시나 별시,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를 대거시라고 하였다. 그런데 법전에는 문신정시에 대한 규정은 「예전」에 별도로 수록되어 있으나 유생정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미 급제한 문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문신정시는 대과라고 할 수 없겠으나, 아직 급제하지 않은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급제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유생정시는 대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전에는 유생정시를 대과의 하나로 규정한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한 유생정시가 바로 춘당대문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春塘臺에 대해서는 꺾 안의 공간이나 시험 장소의 하나로서 주목한 논문들이 있었으나,⁷⁾ 科試의 하나로서 춘당대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5) 『續大典』 「兵典」 試取; 『大典通編』 「兵典」 試取 觀武才覆試; 『典律通補』 「兵典」 試取

6) 『大典通編』 「禮典」 諸科 文臣庭試; 『典律通補』 「禮典」 諸科.

7) 최두진, 「춘당대가 지나는 시험장소로서의 역사적 변화 고찰」, 『역사교육사학』 41-2, 2019; 오 셋별, 「동궐 후원 춘당대의 형성과 기능」,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논문은 없었다. 관무재 또는 관무재의 대거시인 庭試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관무재 · 유생정시와 춘당대시의 관계를 면밀히 고찰하지는 못하였다.⁸⁾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법전에 춘당대무과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법전과 사료 등을 통해 유생정시 및 관무재가 춘당대시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춘당대문과와 유생정시의 관계’와 ‘춘당대무과와 관무재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볼 생각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춘당대무과의 실체를 밝히고, 더 나아가 춘당대시의 문과와 무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II. 春塘臺文科와 儒生庭試의 관계

春塘臺試는 春塘臺에서 비정기적으로 문과와 무과를 아울러 시행하던 대과의 일종이다. 춘당대는 연산군 대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중종 대부터는 科試의 장소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⁹⁾ 숙종 18년(1692)에 창덕궁의 暎花堂을 重修한 뒤로는 영화당 앞의 넓은 공터인 춘당대가 무시의 중심 장소로 활용되었다.¹⁰⁾

춘당대시에 대해서는 『속대전』에 ‘別試, 庭試, 調聖試, 春塘臺試는 문과와 무과만 시행한다.’라는 규정이 보이는데,¹¹⁾ 그중 춘당대문과에 대한 규정은 「禮典」에 보이지만 춘당대무과에 대한 규정은 「兵典」에 보이지 않는다. 춘

8) 심승구, 「조선전기의 관무재 연구」, 『향토서울』, 65, 2005; 이상무, 「관무재 대거 정시 운영 연구『시예등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2-1, 2020.

9) 『연산군일기』 권50 9년 9월 10일 계유; 『중종실록』 권24 11년 2월 6일 정사, 권59 22년 9월 16일 경인, 권61 23년 4월 11일 임자.

10) 최두진, 앞의 논문, 2019, 163쪽; 『숙종실록』 권24 18년 4월 16일 을미, 권24 5월 12일 신유; 『六典條例』 「工典」 工曹 營造司 宮室.

11) 『續大典』 「禮典」 諸科. 이 조항은 원래 式年試와 增廣試는 문과, 무과, 生員進士科, 雜科를 모두 시행하지만 別試, 庭試, 調聖試, 春塘臺試는 생원진사과와 잡과를 시행하지 않고 문과와 무과만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당대문과는 국왕이 춘당대에 나아가 시행하던 춘당대시의 하나로, 문관을 선발하기 위해 전국의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였다. 우선 『속대전』에 수록된 춘당대문과의 규정을 살펴보겠다.

- ① 춘당대문과【各 軍門의 武士를 대상으로 친림하여 기예를 시험 보이고 이어 서 선비들을 시험 보인다. 讀券官과 對讀官에 대한 규정은 謁聖文科와 같다.】
 [額數] 시행할 때가 되면 국왕의 뜻을 물어 정한다.
 [製述] 增廣文科 殿試의 규정과 같다.¹²⁾

①에서는 춘당대문과의 시행 시기, 試官, 선발 정원, 시험 과목을 규정하고 있다. 춘당대문과는 국왕이 직접 참석하여 각 군문의 무사들을 대상으로 기예를 시험 보인 뒤에 시행하였다. 시관으로는 알성문과와 마찬가지로 讀券官 10명과 對讀官 20명을 차출하였다.¹³⁾ 선발 정원은 정해두지 않고 시행할 때마다 국왕의 뜻에 따라 정하였다. 시험 과목은 증광문과 전시와 마찬가지로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 중의 1편이었다.¹⁴⁾

①에서 주목할 점은 춘당대문과의 시행 시기이다. 국왕이 직접 참석하여 각 군문의 무사들을 대상으로 기예를 시험 보인 뒤에 춘당대문과를 시행하였다는 것은 춘당대문과가 자립적으로 시행된 科試가 아니라 특정한 무시가 시행될 때만 시행하던 종속적인 科試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 특정한 무시가 어떠한 무시를 가리키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대전통편』에 보인다. ‘觀武才의 對舉試로 文臣庭試나 儒生庭試를 돌아가면서 시행한다.’¹⁵⁾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조항이 춘당대문과의 조항과 연계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관무제는 ‘국왕이 직접 참석하여 각 군문의 무사들을 대상으로 기예를

12) 『續大典』「禮典」諸科 春塘臺文科 “春塘臺文科【各軍門武士, 親臨試藝, 仍試士. 讀券官, 對讀官, 同謁聖.】: [額數] 臨時稟旨. [製述] 同增廣殿試.”

13) 『續大典』「禮典」諸科 謁聖文科.

14) 『續大典』「禮典」諸科 式年文科殿試·增廣文科殿試

15) 『大典通編』「禮典」諸科 文臣庭試

시험 보이는 科試'로서 '특정한 무시'를 가리키고, 문신정시와 유생정시는 춘당대문과를 가리키게 된다.

관무재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문신정시와 유생정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신정시와 유생정시는 모두 庭試의 일종이므로 庭試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법전에 수록된 정시는 慶科庭試, 重試對舉庭試, 文臣庭試, 儒生庭試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경과정시와 유생정시는 아직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유생과 무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이고, 중시대거정시와 문신정시는 이미 급제한 문신 및 무신·出身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였다. 경과정시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던 정시로,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¹⁶⁾ 중시대거정시는 10년마다 丙年이 되면 시행하는 重試의 대거시로 시행하던 정시로,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¹⁷⁾

『속대전』과 『대전통편』에 수록된 문신정시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하던 문신정시로, 정3품 당상관 이하 및 未分館人이 응시하고 그 성적 및 자급에 따라 加資, 準職 제수, 陞六, 賜馬 등으로 시상하였다.¹⁸⁾ 문신정시는 『성종실록』부터 보이기 시작하나, 인조 때까지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문신정시를 시행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¹⁹⁾ 다만 아래 ②의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춘당대에서 관무재를 시행할 때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를 시행하는 것이 옛 규례라는 말이 보인다. 따라서 문신정시는 다른 과시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시행된 경우와 관무재 등의 대거시로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문신정시는 후자를 가리킨다.

『대전통편』 이후 법전에 나오는 유생정시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된다

16) 『續大典』 「禮典」 諸科; 『銀臺便攷』 「禮房攷」 庭試.

17) 重試의 對舉試는 別試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庭試로 시행할 경우도 있었다. 『續大典』 「禮典」 諸科; 『銀臺便攷』 「禮房攷」 重試.

18) 『續大典』 「禮典」 諸科; 『大典通編』 「禮典」 諸科.

19) 『성종실록』 권169 15년 8월 20일 갑술; 『연산군일기』 권28 3년 12월 8일 을해; 『중종실록』 권9 4년 10월 25일 계축, 권61 23년 4월 23일 갑자; 『선조실록』 권17 16년 3월 27일 가유;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3월 22일 무인.

는 사실 이외에는 자세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²⁰⁾ 사료에서는 『연산군일기』부터 유생정시가 보이기 시작하나, 인조 대까지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²¹⁾ 연산군 이후 인조까지의 사료에 보이는 유생정시의 특징은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庭試는 원래 문과와 무과가 함께 시행되는 大科이나, 유생정시는 무과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²²⁾ 둘째, 庭試는 대과이기 때문에 殿試에서 선발된 及第者에게 紅牌를 발급하였으나, 유생정시에서 선발된 사람에게는 급제자로 인정하여 紅牌를 발급하기도 하고 홍패를 발급하지 않고 直赴殿試, 直赴會試, 給分, 물품 하사 등을 시행하기도 하였다.²³⁾ 따라서 유생정시도 다른 과시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시행된 경우와 관무재 등의 대거시로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의 유생정시는 후자를 가리킨다.

국왕이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를 시행할 때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를 서로 번갈아가며 대거시로 시행한 사례는 사료에도 자주 보인다.²⁴⁾ 문신정시는 관무재나 別試才의 대거시 중 문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를 가리키고, 유생정시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 중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를 가리킨다.²⁵⁾

② 李厚源이 아뢰었다.

20) 『大典通編』 「禮典」 諸科; 『典律通補』 「禮典」 諸科; 『銀臺便攷』 「禮房攷」 觀武才.

21) 『연산군일기』 권15 2년 5월 6일 임자, 권56 10년 11월 20일 병오, 22일 무신; 『중종실록』 권9 4년 10월 25일 계축, 권54 20년 5월 19일 정축.

22) 『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14일 무자; 『광해군일기』 권20 4년 9월 5일 병신; 『인조실록』 권43 20년 8월 26일 계해.

23) 『선조실록』 권10 9년 8월 19일 기묘, 권18 17년 2월 28일 을해, 20년 3월 26일 을묘, 권48 27년 2월 29일 무인, 권187 38년 5월 7일 경진; 『광해군일기』 권33 7년 윤8월 11일 을묘.

24) 『승정원일기』 숙종 3년 3월 22일 무술, 영조 10년 9월 25일 정유, 35년 7월 10일 무오, 정조 2년 9월 9일 을미, 13년 10월 9일 신유.

25) 대거시를 반드시 시행하는 관무재와 달리 별시재는 대거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별시제도 대거시를 시행하였다. 관무재와 별시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춘당대에서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를 시행하여 유생을 선발하기도 하고 문신정시를 시행하기도 하니, 이것도 옛 규례입니다. 宣祖 때에 沈忠謙이 춘당대에서 시행한 유생정시의 壯元으로 급제하였고, 신의 외조부인 黃廷彧도 문신정시의 장원이었습니다.”²⁶⁾

③ 주상이 춘당대에 나아가 선비들을 시험 보여 沈忠謙 등 15명을 선발하였다.²⁷⁾

④ 선조 때에 춘당대에서 科試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춘당대에서 선비를 시험 보인 시초이다.²⁸⁾

⑤ 선조 5년(1572)에 춘당대에서 선비를 시험 보이고 이튿날에 放榜하였다.【춘당대에서 선비를 시험 보인 제도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²⁹⁾

②의 사례를 통해 춘당대에서 관무재를 시행할 때면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나 문신정시를 시행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조 때 춘당대에서 시행한 유생정시에서 심충겸이 장원을 차지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심충겸이 춘당대의 科試에서 선발된 기록은 ③의 『선조수정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燃藜室記述』과 『增補文獻備考』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³⁰⁾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와 고종 때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심충겸이 선발되었던 科試가 춘당대시의 시작이라고 하였다. ④와 ⑤가 각각 그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②와 ③에서 심충겸이

26) 『효종실록』 권10 4년 4월 8일 계묘 “厚源又曰：‘春塘臺觀武才時，或設庭試取士，或設文臣庭試，此，亦古例也。宣廟朝，沈忠謙，以春塘臺庭試壯元登第，臣之外祖黃廷彧，亦文臣庭試壯元矣。”

27) 『선조수정실록』 6권 5년 3월 1일 병술 “上御春塘臺，試士取沈忠謙等十五人。”

28) 『弘齋全書』 「序引」 翼靖公奏藁典禮類叙 科試引 “宣廟朝，設科於春塘之臺，此，春塘臺試士之始也。”

29) 『增補文獻備考』 「選舉考」 科制 “五年，試士于春塘臺，翌日放榜。【試士春塘臺，始此。】”

30) 『燃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科學3 登科摠目；『增補文獻備考』 「選舉考」 科制

급제한 유생정시가 춘당대시 중의 문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춘당대문과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하던 유생정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가 춘당대문과라고 한다면, 그 유생정시와 함께 시행하던 관무재는 춘당대무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과는 무과와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관무재의 대거시인 유생정시가 춘당대문과라는 것은 『國朝榜目』과 『증보문헌비고』 및 『승정원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조방목』과 『증보문헌비고』에는 각 왕대 문과와 무과의 장원들을 수록해 놓았는데, 효종 5년(1654)에 시행한 춘당대문과의 장원은 朴世模이고 춘당대무과의 장원은 崔景立이며, 현종 14년(1673)에 시행한 춘당대문과의 장원은 柳命賢이고 춘당대무과의 장원은 蔡嗣雄이었다.³¹⁾ 이러한 사실은 『승정원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효종 5년에 관무재를 시행하면서 대거시로 문신정시와 유생정시를 아울러 시행하였는데, 이때 문신정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承文院權知 李弘相에게는 熟馬 1필을 面給하였고, 무과의 장원인 박세모는 成均館典籍에 제수하고 무과의 장원인 최경립은 通禮院引儀에 제수하였다.³²⁾ 이때의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를 가리키고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를 가리켰다. 현종 14년에는 관무재를 시행하면서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하였는데, 이때 문과의 장원인 유명현은 성균관전적에 제수하였고 무과의 장원인 蔡嗣雄은 瓦署別提에 제수하였다.³³⁾ 이때도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를 가리키고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를 가리켰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면, 해당 관무재는 춘당대무과가 되고 그 대거시로 시행하던 유생정시는 춘당대문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춘당대문과는 모두 유생정시로 시행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

31) 『國朝榜目』 卷11 孝宗朝, 卷12 顯宗朝; 『增補文獻備考』 「選舉考」 科制. 『증보문헌비고』에는 蔡嗣雄이 蔡嗣胤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사료에서는 채사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사윤의 '雄' 자를 '胤'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32) 『승정원일기』 효종 5년 3월 7일 정유, 8일 무술, 12일 임인.

33) 『승정원일기』 현종 14년 3월 13일 계미, 27일 정유.

다. 즉 춘당대문과=유생정시라는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조방목』에는 춘당대시의 급제자를 각 왕대별로 ‘春塘臺榜’이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였는데, 춘당대방에는 문과의 장원과 급제자 및 무과의 장원이 수록되어 있다.³⁴⁾ 『국조방목』에 ‘春塘臺榜’으로 수록된 횟수는 총 21회인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春塘臺試의 시행 시기 및 壯元(출전: 『國朝榜目』)

시행 시기		春塘臺文科 壯元	春塘臺武科 壯元	번호
선조	5년 3월 10일	生員 沈忠謙		❶
효종	5년 3월 11일	內侍教官 朴世模	崔景立	❷
	6년 4월 11일	幼學 柳昞重	李天賚	❸
현종	5년 4월 13일	司饗院直長 閔蕃重	具英望	❹
	14년 3월 26일	進士 柳命賢	蔡嗣雄	❺
숙종	6년 6월 8일	前參奉 李師命	金端漢	❻
	8년 4월 18일	參奉 金構	梁楫	❼
	12년 4월 5일	通德郎 趙湜	洪禹善	❽
	18년 8월 11일	進士 愼爾益	尹興萬	❾
	24년 9월 11일	司宰監奉事 尹憲柱	李碩蕃	❿
	26년 9월 2일	進士 李翊漢	鄭斗暹	⓫
	30년 9월 3일	參奉 韓世弼	金振聲	⓬
	36년 8월 9일	牧使 李世勉		⓭
	45년 10월 1일	通德郎 南壽賢	金興尙	⓮

34) 『國朝榜目』(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貴11655-v.1-12)과 『國朝文科榜目』(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奎106-v.1-8)에는 科試에 따른 榜目の 이름을 각 왕의 재위 연도별로 ‘式年榜’, ‘增廣榜’, ‘別試榜’, ‘庭試榜’, ‘調聖榜’, ‘春塘臺榜’ 등으로 구별하여 수록하였다. 따라서 ‘春塘臺榜’은 춘당대시의 방목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國朝榜目』과 『國朝文科榜目』은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책이나, 과거의 명칭인 科名이나 급제자 개개인의 인적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은 각각 달랐다. 박현순, 「國朝文科榜目の 편찬과 18세기 ‘인물정보학」, 『규장각』 56, 2020, 176쪽.

영조	4년 5월 29일	生員 吳瑗	姜弼周	⑮
	10년 10월 10일	幼學 李命坤	金義淑	⑯
	20년 3월 25일	進士 張澍仁	金益祚	⑰
	22년 7월 24일	前參奉 李命熙	申胤光	⑱
	24년 3월 25일	內侍教官 金致仁	金潤章	⑲
	25년 3월 16일	幼學 李亮天	趙衍禎	㉑
	27년 2월 18일	通德郎 吳瓚	朴萬興	㉒

<표 1>에 정리된 춘당대시는 총 21회로, 문과는 21회 모두 장원이 기록되어 있으나 무과의 장원은 ①과 ⑮ 2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중 ①의 춘당대시는 『선조실록』에 관무재나 무과의 시행 여부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⑬의 춘당대시는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통해 당시에 관무재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한편 이상무는 『試藝臚錄』에 근거하여 효종 5년(1654)부터 영조 20년(1744)까지 90년 동안 관무재가 총 20회 시행되었고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가 9회 시행되었는데, 유생정시는 모두 춘당대시로 기록되었다고 하였다.³⁶⁾ 『국조방목』과 『시예등록』을 비교해 보기 위해 『시예등록』에 근거하여 관무재의 대거시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³⁷⁾

<표 2> 觀武才의 시행 시기 및 對舉試(출전: 『試藝臚錄』)

觀武才 시행 시기		對舉試	번호	<표 1>과 대조
효종	4년(1653)	문신정시	①	
	5년(1654) 3월	문신정시+유생정시 병행	②	②
	5년(1654) 9월	문신정시	③	
	6년(1655)	유생정시	④	⑤
	9년(1658)	문신정시	⑤	

35) 『숙종실록』 49권 36년 8월 6일 무진; 『승정원일기』 숙종 36년 8월 6일 무진, 10일 임신

36) 이상무, 앞의 논문, 2020, 122~126쪽.

37) 『試藝臚錄』(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2911-v.1-2).

현종	3년(1662)	유생정시 → 문신정시 변경	6	
	5년(1664)	유생정시	7	4
	6년(1665)	문신정시	8	
	10년(1669)	문신정시	9	
	14년(1673)	유생정시	10	5
숙종	3년(1677)	문신정시	11	
	5년(1679)	문신정시	12	
	8년(1682)	유생정시	13	7
	12년(1686)	문신정시	14	
	17년(1691)	문신정시	15	
	18년(1692)	유생정시	16	9
	20년(1694)	문신정시	17	
	26년(1700)	유생정시	18	11
	33년(1707)	문신정시	19	
36년(1710)	유생정시	20	13	
경종	3년(1723)	문신정시	21	
영조	10년(1734)	유생정시	22	16
	20년(1744)	문신정시+유생정시 병행	23	17

<표 1>과 <표 2>의 대조를 통해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 10회는 모두 춘당대시로 기록되었으나, 문신정시는 춘당대시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이는 유생정시는 蔭官을 포함하여 儒生을 대상으로 시행한 科試이고 문신정시는 이미 급제한 文臣을 대상으로 시행한 科試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신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관무재가 시작되는 첫날에 시행하였고,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관무재의 마지막 날에 시행하였다.³⁹⁾

38) 이상무는 같은 기간에 관무재의 대거시가 아니지만 춘당대시로 기록된 횟수가 숙종 6년(1680), 숙종 30년(1704), 숙종 45년(1719), 영조 4년(1728) 등 4회라고 하였다. 이상무, 앞의 논문, 2020, 126쪽.

39)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8월 4일 정유, 35년 7월 10일 무오, 정조 2년 9월 9일 무오.

이제 『국조방목』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시예등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11회의 춘당대문과도 유생정시인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은 선조 5년(1572)에 시행한 최초의 춘당대시로, 그 때의 문과가 유생정시로 시행된 사실은 ②에 보이는 李厚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이때의 유생정시가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것인지는 기록이 없다.

⑥의 춘당대시가 시행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숙종이 즉위한 이후로 처벌을 당한 유생이 700여 명이나 되었으므로, 숙종이 유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숙종 6년(1680) 5월 27일에 承旨와 兩館의 提學을 成均館에 보내 유생을 시험 보여 12명을 선발하고 그중 수석을 차지한 黃琬 및 그 다음 성적을 차지한 申啓華와 姜鏡을 모두 전시에 직부하도록 하였다.⁴⁰⁾ 그리고 그 동안 문과와 무과의 전시에 직부하도록 한 유생과 무사들만을 모아서 6월 8일에 춘당대에서 庭試를 시행하여 등수를 정하였다.⁴¹⁾ 이때의 춘당대문과에서는 李師尙이, 춘당대무과에서는 金端漢이 장원으로 급제하였다.⁴²⁾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가 시행되면 그 유생정시와 관무재가 각각 춘당대시의 문과와 무과가 되었으나, ⑥의 춘당대시는, 直赴儒生을 대상으로 춘당대에서 시행한 정시는 춘당대문과가 되고 直赴武士를 대상으로 춘당대에서 시행한 정시는 춘당대무과가 되었다.

⑧의 춘당대시와 ⑭의 관무재는 모두 숙종 12년(1686)에 시행된 科試지만 시행 월일이 달랐다. ⑧의 춘당대시는 4월 5일, ⑭의 관무재는 8월 6일에 각각 춘당대에서 시행하였다. ⑧의 춘당대시는 그해 4월 3일 謁聖試에 응시하기 위해 유생들이 입장하다가 다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알성시를 중지하고 이틀 뒤에 대신 시행한 정시였다.⁴³⁾ 이때 춘당대문과에서는 趙湜

40) 『국조방목』에는 11명을 선발하였다고 하였으나, 『승정원일기』에는 12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 숙종 6년 5월 24일 임자, 27일 을묘, 28일 병진; 『숙종실록』 권9 6년 5월 27일 을묘.

41) 『숙종실록』 권9 6년 5월 29일 정사, 6월 8일 을축; 『승정원일기』 숙종 6년 6월 7일 갑자.

42) 『國朝榜目』 卷13 肅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3 肅宗朝.

43)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4월 2일 병술, 3일 정해, 4일 무자.

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成均館典籍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洪禹善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造紙署別提에 제수되었다.⁴⁴⁾ 문과와 무과의 장원에게 이러한 관직을 제수한 것은 법전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즉 문과와 무과의 장원에게는 종6품의 관직을 제수하도록 한 법전의 규정에 따라 趙滉은 정6품의 성균관전직에 제수하고 洪禹善은 종6품의 조지서별제에 제수하였던 것이다.⁴⁵⁾ ⑧의 춘당대시도 관무제 및 대거시와는 관계가 없는 정시였다.

⑩의 춘당대시는 숙종 24년(1698)에 숙종이 謁聖한 뒤에 시행한 科試였다.⁴⁶⁾ 그리고 이때에는 무과의 초시를 마친 뒤에 별도로 別試射도 시행하였다.⁴⁷⁾ 따라서 이때의 科試가 謁聖試를 가리키는지 정시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별시사와 그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⑩의 科試에서는 尹憲柱가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직에 제수되었고 李碩蕃이 무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南部主簿에 제수되었는데, 『국조방목』과 『국조문과방목』을 비롯한 사료에는 모두 이 科試를 춘당대시로 기록하고 있다.⁴⁸⁾ 李宜顯의 문집인 『陶谷集』에서도 ⑩의 科試를 ‘春塘臺庭試’로 부르고 있다.⁴⁹⁾ 그러나 『庭試文科榜』에는 알성시로 수록되어 있다.⁵⁰⁾

⑫의 춘당대시는 숙종 30년(1704)에 숙종의 특별 명령으로 시행한 庭試였다. 3년마다 한 차례씩 시행하던 式年試는 전년 가을에 初試를 미리 시행하고 이듬해 봄에 覆試와 殿試를 시행하였다.⁵¹⁾ 숙종이 이 해에 이듬해 식년시를 앞두고 가을에 시행하는 生員進士試의 초시에 응시하기 위해 선비들이 많

44) 『國朝榜目』 卷13 肅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3 肅宗朝; 『승정원일기』 숙종 12년 4월 5일 기축; 『숙종실록』 권17 12년 4월 5일 기축.

45) 『大典通編』 「吏典」 諸科; 『大典通編』 「兵典」 武科. 법전에는 대과의 장원을 종6품의 관직에 제수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정6품과 종6품을 구별하지 않고 제수하였다.

46)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9월 10일 신사, 11일 임오.

47)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9월 3일 갑술, 4일 을해, 9일 경진; 『숙종실록』 32권 24년 9월 11일 임오.

48) 『國朝榜目』 卷13 肅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3 肅宗朝; 『燃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科擧3 登科摠目; 『승정원일기』 숙종 24년 9월 11일 임오.

49) 『陶谷集』 卷23 行狀 先考議政府左議政府君行狀.

50) 『庭試文科榜』 「謁聖文科榜」(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308).

51) 『大典通編』 「禮典」 諸科.

이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특별히 시행한 정시가 ⑫의 춘당대시였다.⁵²⁾ 『승정원일기』에는 이때의 춘당대문과를 유생정시로, 춘당대무과를 관무재로 기록하기도 하였다.⁵³⁾ 그러나 숙종이 정시를 시행하라고 명하면서 내린 비방기의 내용으로 볼 때, 관무재는 시행하지 않고 정시가 끝난 뒤에 무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시와는 별도로 관무재의 예에 따라 별시재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⁴⁾ 따라서 ⑫의 춘당대시는 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⑫의 춘당대문과에서는 韓世弼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金振聲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軍器寺主簿에 제수되었다.⁵⁵⁾

⑭의 춘당대시는 숙종 45년(1719)에 시행한 유생정시와 관무재였다. 『시예등록』에는 숙종 45년에 관무재를 시행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해 『승정원일기』에는 당시 代理聽政하던 王世子가 謁聖한 뒤에 관무재 및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⁵⁶⁾ ⑭의 춘당대문과에서는 南壽賢이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춘당대무과에서는 金興尙이 장원으로 급제하였다.⁵⁷⁾

⑮의 춘당대시는 영조 4년(1728)에 李麟佐 등의 반란을 진압할 때 出征한 將校와 軍兵 등을 위로하기 위해 시행한 科試로, 그중 무과에 대해서는 관무재로 기록된 경우와 別試才로 기록된 경우가 『승정원일기』에 뒤섞여 있다.⁵⁸⁾ 『국조방목』에는 이때의 유생정시가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되었다고 하여 춘당대무과를 관무재로 보았으나, 『국조문과방목』에는 이때의 科試를 庭試라고 하였다.⁵⁹⁾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영조의 말을 살펴보면,

52)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8월 3일 경오.

53)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9월 1일 무술, 2일 기해.

54)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8월 3일 경오, 9월 2일 기해.

55) 『國朝榜目』 卷13 肅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3 肅宗朝;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9월 3일 경자.

56) 『승정원일기』 숙종 45년 9월 25일 임술, 30일 정묘, 10월 12일 기묘.

57) 『國朝榜目』 卷14 肅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3 肅宗朝; 『숙종실록』 권64 45년 10월 1일 경자.

58)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16일 병인, 27일 정축, 28일 무인, 29일 기묘.

59) 『國朝榜目』 卷16 英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5 英宗朝.

이때의 춘당대무과는 별시재로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⁶⁰⁾ 그렇다면 이때의 유생정시는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라고 할 수 있다. ⑮의 춘당대문과에서는 吳璣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姜弼周가 장원으로 급제하여 禮賓寺主簿에 제수되었다.⁶¹⁾

⑯의 춘당대시는 유생정시와 관무재로 시행한 科試였다. 『시예등록』에는 영조 22년(1746)에 관무재를 시행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해 『승정원일기』에는 영조의 傳敎에 따라 관무재와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⁶²⁾ 『庭試文科榜』과 『燃藜室記述』에도 이때의 춘당대문과를 관무재의 대거시로 기록하고 있다.⁶³⁾ ⑰의 춘당대문과에서는 李命熙가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申胤光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義盈庫主簿에 제수되었다.⁶⁴⁾

⑱의 춘당대시는 영조 24년(1748)에 시행한 정시였다. 그해 2월에 숙종의 影幀을 그려 永禧殿에 봉안한 뒤 영조가 이를 기념하여 3월에 정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⁶⁵⁾ 이때의 춘당대시를 『정시문과방』에는 ‘春塘臺親臨庭試文科榜’으로, 『연려실기술』에는 ‘春塘臺庭試’로 기록하고 있다.⁶⁶⁾ ⑲의 춘당대문과에서는 金致仁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金潤章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繕工監主簿에 제수되었다.⁶⁷⁾

⑳의 춘당대시는 영조가 성균관에 나아가 謁聖한 뒤에 시행한 科試였다. 영조는 25년(1749) 2월에 별시재를 마치고 시상하는 자리에서 알성한 뒤에

60) 주) 58과 같음. 이때의 별시재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겠다.

61) 『승정원일기』 영조 4년 6월 10일 을축.

62)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7일 신축, 21일 을묘, 24일 무오.

63) 『庭試文科榜』; 『燃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科學3 登科摠目.

64) 『國朝榜目』 卷17 英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6 英宗朝;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24일 무오.

65) 『영조실록』 권67 24년 1월 17일 임인, 권67 2월 25일 기묘;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2월 25기묘, 26일 경진, 3월 1일 을유, 25일 기유.

66) 『庭試文科榜』; 『燃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科學3 登科摠目.

67) 『國朝榜目』 卷17 英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5 英宗朝;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3월 25일 기유.

춘당대에서 선비들을 試取하겠다고 하였다.⁶⁸⁾ 그리하여 3월 16일에 영조가 文廟에 나아가 酌獻禮를 행하고 춘당대로 돌아와서 문과와 무과를 시행하였다.⁶⁹⁾ 『승정원일기』에는 이때의 무과를 謁聖文科라고 부른 사례가 한 차례 보이고, 『영조실록』에도 이때의 科試를 ‘謁聖文武科’라고 기록하였다.⁷⁰⁾ 『연려실기술』과 『武科總要』와 『庭試文科榜』에도 이때의 科試를 알성시로 기록하고 있다.⁷¹⁾ 그러나 『국조방목』과 『국조문과방목』에는 이 科試를 춘당대시로 기록하고 있다.⁷²⁾ 따라서 이때의 科試가 알성시인지 춘당대시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국조방목』을 따를 경우 ㉓의 춘당대문과에서는 李亮天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趙衍禎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長興庫主簿에 제수되었다.⁷³⁾

㉔의 춘당대시는 元孫의 탄생을 경하하여 시행한 정시였다. 영조 26년(1750)에 당시 王世子嬪이던 惠嬪이 원손을 낳자 영조가 慶科로 시행한 정시가 ㉔의 科試로,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에는 이때의 科試를 慶科庭試로 기록하였다.⁷⁴⁾ 『승정원일기』와 『영조실록』과는 달리 『연려실기술』에는 이때의 科試를 ‘春塘臺庭試’로 기록하고 있다.⁷⁵⁾ 『국조방목』과 『국조문과방목』에도 이 科試를 춘당대시로 기록하고 있다.⁷⁶⁾ 그 외에도 『정시문과방』에는 ‘元孫誕生春塘臺親臨庭試別試文科榜’으로, 『武科總要』에는 ‘元孫誕生庭試’라고 기록하고 있다.⁷⁷⁾ 따라서 이때의 科試가 慶科庭試인지 춘당대시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국조방목』을 따를 경우 ㉔의 춘당대문과에서는 吳瓚이

68)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2월 25일 계묘, 26일 갑진, 27일 을사, 29일 정미.

69)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3월 16일 갑자.

70)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3월 2일 경술; 『영조실록』 69권 25년 3월 16일 갑자.

71) 『燃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科學3 登科摠目; 『武科總要』 卷3; 『庭試文科榜』 「謁聖文科榜」.

72) 『國朝榜目』 卷17 英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5 英宗朝.

73) 위와 같음. 『승정원일기』 영조 25년 3월 16일 갑자.

74) 『영조실록』 권72 26년 8월 27일 정유, 권73 27년 2월 18일 병술;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11월 25일 갑자, 27년 1월 6일 갑진, 13일 신해, 2월 18일 병술.

75) 『燃藜室記述』 「別集」 <官職典故> 科學3 登科摠目.

76) 『國朝榜目』 卷17 英宗朝; 『國朝文科榜目』 卷15 英宗朝.

77) 『庭試文科榜』; 『武科總要』 卷3.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직에 제수되었고, 춘당대무과에서는 朴萬興이 장원으로 급제하여 司圃署別提에 제수되었다.⁷⁸⁾

이상으로 『국조방목』에는 춘당대시로 수록되어 있으나 『시예등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총 11회의 科試가 과연 춘당대시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1회 중 춘당대시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⑩, ⑳, ㉑ 등 3회이다. 둘째, 춘당대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3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8회의 춘당대문과는 모두 정시로 시행되었고, 그중 4회가 유생정시로 시행되었다. 셋째, 춘당대시 중 무과의 기록이 없는 ㉑과 춘당대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3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7회의 춘당대무과는 정시, 관무재, 별시재로 시행되었다. 그중 정시가 4회, 관무재가 2회, 별시재가 1회였다.

『국조방목』에는 춘당대시로 수록되어 있으나 『시예등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科試 11회 중 춘당대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3회를 제외하면 춘당대문과는 모두 정시로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정시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가 4회이나, 나머지 4회의 경우는 어떠한 정시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정시가 어떠한 정시를 가리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법전에 수록된 정시는 慶科庭試, 重試對舉庭試, 文臣庭試, 儒生庭試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춘당대시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정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4회의 정시는 경과로 시행한 정시도 아니고, 중시의 대거시로 시행한 정시도 아니며,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하던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도 아니다. 앞서 이러한 춘당대시를 『연려실기술』에는 ‘春塘臺庭試’로 수록된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다른 정시와 구별하고 문과와 무과를 아우르는 뜻에서 ‘春塘臺庭試’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럴 경우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나 춘당대정시문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조방목』에 수록된 총 21회의 춘당대시 중 춘당대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78) 주) 76과 같음. 『승정원일기』 영조 27년 2월 18일 병술.

3회를 제외한 나머지 18회의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로 시행된 것이 14회 <77.8%>이고, 춘당대정시문과로 시행된 것이 4회<22.8%>이다. 유생정시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경우가 13회이고,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경우가 1회이다. 이처럼 유생정시가 춘당대문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되어 문과와 무과를 갖출 때라야 가능하였다.

유생정시와 함께 번갈아가면서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하던 문신정시는 춘당대문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문신정시는 이미 문과에 급제한 문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일종의 평가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대전』과 『전율통보』에는 ‘춘당대문과’와 별도로 ‘문신정시’의 항목을 두고 있다. 이것은 문신정시가 춘당대문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법전에는 『속대전』에 춘당대문과와 문신정시가 처음으로 수록되었는데, 시관과 시험 과목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속대전』을 기준으로 춘당대문과와 문신정시의 규정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春塘臺文科와 文臣庭試 비교(출전: 『續大典』)

분류	春塘臺文科	文臣庭試
시행 시기	각 軍門의 武士를 시험 보인 뒤	親臨 觀武才의 對舉試로 시행할 때
시험 과목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 중의 1편.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律詩 중의 1편.
선발 인원	국왕의 의견을 물어 결정.	국왕의 의견을 물어 결정.
試官	讀券官 10명, 對讀官 20명.	讀券官 3명<議政 1/정2품 이상 2>, 對讀官 4명<중2품>.

<표 3>에 보이는 춘당대문과와 문신정시의 규정은 試官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춘당대문과의 시행 시기를 ‘각 軍門의 武士를 시험 보인 뒤’라고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생정시를 친립관무재의 마지막 날인 終日에 시행한 것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춘당대문과로 유생정시를 시행하면 그 시행 시기는 문신정시와 마찬가지로

가지로 ‘친림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할 때’가 된다. 시험 과목에 있어서는 문신정시를 시행할 때 律詩를 추가하여 선택한다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조방목』에 수록된 춘당대시 중 춘당대 문과는 유생정시나 춘당대정시문과로 시행되었다. 유생정시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될 때라야 춘당대문과가 될 수 있었다. 춘당대정시문과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舉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국왕의 특명으로 시행할 때의 문과를 가리킨다. 문신정시는 유생정시와 번갈아가며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하였으나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시가 아니라 문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시였기 때문에 춘당대문과가 될 수 없었다.

Ⅲ. 春塘臺武科와 觀武才의 관계

앞의 장에서는 춘당대시가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관무재나 별시재를 시행할 때 유생정시를 그 대거시로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런 때에는 유생정시가 춘당대문과가 되고 관무재나 별시재가 춘당대무과가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重試의 對舉重試나 慶科庭試가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시를 春塘臺庭試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법전에 춘당대시는 춘당대문과만 수록되어 있고 춘당대무과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관무재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춘당대무과와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사료에 보이는 관무재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武才를 관람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의 관무재는 『중종실록』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조선전기의 사료에 계속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관무재 및 국왕이 閱武한 뒤의 관무재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⁷⁹⁾

둘째는 武試의 일종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관무재는 『속대전』 등의 법전에 수록된 관무재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무시의 일종인 관무재는 선조와 광해군 때의 기사에도 보인다.⁸⁰⁾ 법전에 수록된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며,⁸¹⁾ 자격시험, 선발시험, 평가시험이 혼재된 科試였다.⁸²⁾ 여기에서 살펴볼 관무재는 이를 가리킨다.

셋째는 무시의 형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때의 관무재는 別試才와 비교하여 큰 규모로 시행하는 무시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의 관무재는 서울 이외에 江華·開城·廣州·水原 등의 지방에서도 시행되었는데, 지방에서 시행하는 外方別科를 관무재로 시행할지 별시재로 시행할지는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⁸³⁾

다음으로 『속대전』 등의 법전에 수록된 관무재를 시행 시기, 응시 대상, 시험 과목, 시관, 선발 정원의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속대전』과 『전율통보』에서는 관무재의 시행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만기요람』에는 龍虎營·訓練都監·禁衛營·御營廳 등 각 군문의 관무재를 구분하여 수록하였는데, 관무재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국

79) 『증중실록』 권6 3년 5월 5일 임인, 권23 10년 9월 16일 기해, 권44 17년 4월 16일 임진, 권55 20년 8월 18일 을사; 『명종실록』 권10 5년 8월 25일 병술, 권19 10년 8월 24일 병술; 『선조실록』 권18 17년 3월 20일 정유.

80) 『선조실록』 권62 28년 4월 29일 신미; 『광해군일기』 권144 11년 9월 19일 무술.

81) 심승구는 중종 4년(1509)부터 무과에 直赴制가 도입되면서 관무재가 새로운 시험 형식으로 발전하였으며, 명종 때부터 실제로 관무재가 초시와 복시의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심승구, 앞의 논문, 2005, 130쪽.

82) 관무재는 국왕의 특별 하교가 있을 때 전직과 현직의 武官, 出身과 閑良, 將校와 軍兵 등 거의 모든 武士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상도 선발된 사람의 신분과 성적에 따라 다양하였다. 한량에게 殿試나 會試에 直赴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관무재의 자격시험 성격을 나타낸 것이고, 한량에게 급제자로 인정하여 紅牌를 발급하는 것은 관무재의 선발시험 성격을 나타낸 것이며, 출신에게 加資하거나 관직 제수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은 관무재의 평가시험 성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관무재는 자격시험, 선발시험, 평가시험이 혼재된 科試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가지 科試에 여러 가지 성격이 혼재된 것은 무시의 특성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하겠다. 관무재 이외에 각종 試才·試射·都試·取才 및 中日과 中句 등도 다양한 신분이 응시하고 그 신분과 성적에 따라 시상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83) 『典律通補』「兵典」諸科;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8월 30일 정유, 영조 4년 5월 21일 신미, 15년 2월 5일 임오; 『大典通編』「兵典」試取

왕의 특명이 있을 때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각 군문에서 관무재를 시행한 시기와 횟수를 수록하였다.⁸⁴⁾ 그에 따르면 용호영과 훈련도감은 효종 3년(1652)에 처음 관무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현종 3년(1662), 숙종 2년(1676) · 12년(1686) · 24년(1698), 경종 3년(1723), 영조 3년(1727) · 20년(1744) · 35년(1759), 정조 2년(1778)에도 관무재를 시행하였다. 『승정원일기』의 사례에 의하면 관무재는 국왕이 군병을 사열한 뒤나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는데, 5년이나 10년에 1차례 등 드물게 시행하였다.⁸⁵⁾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초시는 試所를 두 곳으로 나누어 禁軍 및 각 軍營의 將校와 軍兵, 전직과 현직의 武官, 出身과 閑良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관무재의 응시 대상은 별시재와 달리 전직과 현직, 출신과 한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응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매우 많았다.⁸⁶⁾ 『대전통편』에 의하면, 관무재 초시의 시험 과목은 7기, 9기, 11기, 21기 중에서 국왕의 낙점을 받아 技數와 矢數를 정하였는데, 응시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시험 과목이 달랐다. 기본적으로는 국왕의 낙점을 받은 4기로 시취하였으나, 五軍門의 軍官, 扈衛廳의 軍官, 有廳軍官, 현직과 전직 관원, 출신과 한량은 2기로 시취하였고, 오군문과 호위청의 付料軍官, 西北의 未付料軍官, 北漢山城의 守堞軍官과 付料軍官, 軍器寺의 別破陣은 1기로 시취하였다. 금군은 4기에 鞭芻와 騎槍交戰을 합하여 6기로 병조판서가 시취하였다. 각 군문의 군병은 조총 및 각종 技藝로 각 군영에서 시취하되, 馬軍 이상은 3기를 추가하여 낙점을 받아 시취하였고, 步軍은 21기를 열거하여 낙점을 받아 시취하였으며, 수어청과 충융청의 보군은 조총 1기로 시취하였다. 초시의 시관으로는 두 곳의 시소마다 2품 이상 문신과 무신 각 1명을 차출하

84) 『萬機要覽』 「軍政編」2 龍虎營, 訓練都監 試藝, 「軍政編」3 禁衛營 試藝, 御營廳 試藝.

85)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24일 병신, 15년 2월 5일 임오, 정조 1년 4월 5일 경자, 2년 8월 13일 경오, 9월 4일 경오, 8년 8월 22일 을사. 이상무는 『試藝曆錄』에 1654년부터 1744년까지 90년 동안 총 20회의 관무재가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효종 때에는 1, 2년 간격으로 계속 시행되다가, 숙종 대로 들어와서는 4년에서 5년 정도로 간격이 늘어났고, 숙종 대 후반부터는 거의 10년에 1번꼴로 실시되었다고 하였다. 이상무, 앞의 논문, 2020, 122쪽.

86)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5월 15일 무신

였고, 참시관으로는 당하관 문신과 무신 각 1명을 차출하였으며, 감시관으로는 감찰을 차출하였다. 초시의 선발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초시에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복시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관무재의 복시는 초시를 통과한 사람과 초시를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親臨과 命官으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대전통편』과 『진율통보』에서는 관무재의 복시를 시행할 때 국왕이 친림하는 곳의 시관과 별도로 외부에서 命官이 주관하는 곳의 시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관무재의 복시를 親臨覆試와 命官覆試로 나누어 시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관무재에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궐내와 궐외로 나누어 시행하였던 것이다.⁸⁷⁾ 초시를 면제해 주는 대상은 무신으로서 嘉善大夫 이상, 禁軍別將, 扈衛別將, 禁軍將, 五衛將, 內乘, 別軍職, 명조의 堂上軍官, 五軍門 中軍 이하의 將官 및 將校들, 宣傳官, 武兼宣傳官, 都摠府 郎廳, 西北의 付料軍官, 濟州의 付料子弟 등이었다.⁸⁸⁾ 복시의 시험 과목은 13기 중에서 국왕의 낙점을 받아 정하였는데, 초시에서 합격한 사람은 초시에서 합격한 기예로 시취하고, 초시를 면제받은 사람은 낙점받은 4기로 시취하였다. 복시의 시관은 국왕이 친림하는 곳에는 참시관으로 2품 이상 문신 1명과 무신 2명을 차출하였으며, 외부의 명관으로는 의정 1명을 차출하고 참시관은 친림하는 곳과 동일하게 차출하였다. 또 御座의 좌우에는 2품의 시관 각 2명씩을 차출하였다. 복시의 선발 정원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선발된 사람에 대한 시상은 응시 대상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① 閑良은 入格한 사람이면 殿試에 직부할 자격을 주고,【龍榜과 虎榜을 갖추면

87) 御前에서 鳥銃 시험을 보이는 것이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조총 시험을 궐외의 慕華館과 訓練院에서 시행하도록 한 기사가 사료에 나오기는 하지만, 武試의 시험 장소를 궐내와 궐외로 나누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응시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이 참석하는 궐내와 궐외의 武試에서 조총을 시험 보인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8월 21일 경오, 숙종 12년 7월 28일 병진, 25년 8월 13일 무인, 경종 3년 8월 22일 기사, 정조 2년 9월 16일 임인, 8년 9월 24일 병자.

88) 『승정원일기』 정조 2년 9월 10일 정묘.

그날 放榜한다.】 그 다음 성적을 거둔 사람이면 시상한다. 出身 이상은 柳葉箭에서 3발을 맞혀 4분을 받은 사람이면 守令이나 邊將에 제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입격한 사람이면 加資하며, 그 다음 성적을 거둔 사람이면 시상한다.【鞭芻나 殺手의 技藝로 입격한 사람에게는 殿試에 直赴할 자격을 주지 않는다.】⁸⁹⁾

관무재 복사에서 입격한 한량에게 전시에 직부할 자격을 준다는 것은 관무재가 급제자를 배출하는 무과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관무재는 춘당대무과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에 대한 細注에서 ‘龍榜과 虎榜을 갖추면 그날 放榜한다.’라고 한 것은 관무재가 무과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龍虎榜은 원래 唐나라 陸贄가 試官으로서 韓愈와 李觀 등의 훌륭한 인재를 선발한 榜目을 가리켰다.⁹⁰⁾ 그 뒤 우리나라에서는 용방은 文科榜目, 호방은 武科榜目的 의미로 사용되었다.⁹¹⁾ 따라서 용방과 호방을 갖추었다는 말은 관무재와 그 대거시가 각각 무과와 문과로 시행되었을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러한 무과와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紅牌와 御賜花를 수여하는 의식인 放榜을 科試가 시행된 당일에 거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①에서 말한 ‘용방과 호방을 갖춘 경우’란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 것일까?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대거시로 문신정시나 유생정시를 서로 번갈아가며 시행하였는데, 그중 유생정시를 관무재의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그 유생정시를 춘당대문과로 인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앞의 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유생정시가 대거시로 시행될 때의 관무재는 춘당대무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과는 문과와 무과를 같이 시행하였으므로, 춘당대시도 문

89) 『續大典』 「兵典」 試取 觀武才覆試 “閑良, 則入格者直赴殿試【具龍虎榜, 則即日放榜.】 其次論賞. 出身以上, 則柳葉箭三中四分者, 守令, 邊將除授, 入格優等者, 加資, 其次論賞.【鞭芻及殺手技藝, 無賜第.】”

90) 『新唐書』 卷203 「歐陽詹列傳」.

91) 『春官通考』 卷69 「嘉禮」 科制 太宗代; 『일성록』 정조 8년 9월 29일 신사. 정조 8년(1784)에 당시 元子이던 文孝世子를 世子로 책봉한 경사를 기념하여 慶科庭試를 시행하고 나서 간행한 榜目인 『王世子冊封慶龍虎榜』(奎109)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과와 무과를 같이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대전』에서 ‘武科는 이제 別試, 謁聖試, 庭試, 觀武才 등의 과시를 추가로 시행한다.’⁹²⁾라고 하여 관무재를 무과의 하나로 거론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관무재의 대거시로 문신정시를 시행하여 용방과 호방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무재 복사에서 입격한 한량에게 전시나 회시에 직부할 자격을 주었을 뿐이었다.⁹³⁾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경우의 관무재는 무과이므로 전시의 시관이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대전통편』에 관무재 전시의 시관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② 친립하는 전시에는 參試官으로 2품 이상의 문관과 무관 각 1명, 3품 이하의 參考官으로 당상 무관 1명 및 당하 문관 1명과 당하 무관 2명을 차출한다.⁹⁴⁾

②를 통해 관무재의 전시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전에 관무재 전시의 시관 규정을 수록하였다는 것은 관무재의 전시가 시행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의 전시가 과연 관무재 복시와는 별개로 시행했던 전시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무재의 복시를 전시라고 불렀던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속대전』에는 관무재 복시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와 『시예등록』에 수록된 관무재의 실제 사례에서는 初試와 殿試가 시행된 기사는 보이지만 ‘覆試’라는 어휘는 찾을 수 없다. 관무재의 복시와 전시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조 10년(1734)에 시행되었던 관무재를 살펴보겠다. 『승정원일기』에 수록된 영조 10년(1734) 관무재의 일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92) 『續大典』 「兵典」 <試取>.

93) 『승정원일기』 정조 2년 9월 19일 을사.

94) 『大典通編』 「兵典」 試取 觀武才覆試 “親臨殿試 差參試官二品以上文武各一員、三品以下參考官堂上武一員·堂下文一員武二員。”

〈표 4〉 영조 10년(1734) 觀武才의 일정(출전: 『승정원일기』)

번호	일일	觀武才의 진행
①	9월 24일	영조가 10월 10일 이전으로 吉日을 잡아 관무재를 시행하도록 함.
②	9월 25일	* 예조의 擇日에 따라 관무재 日일을 10월 7일로 정함. * 관무재의 對舉試로 유생정시를 시행하도록 함.
③	9월 26일	* 관무재의 終日에 유생정시를 시행하고 그날 放榜하도록 함. * 9월 28일부터 관무재의 初試를 訓練院·慕華館에서 시행하도록 함. * 禁軍은 9월 27일부터 관무재 초시를 시행하도록 함.
④	9월 27일~ 10월 6일	* 병조 및 각 軍門별로 관무재 초시를 시행함. * 병조 및 각 軍門별로 入格者를 別單으로 작성하여 보고함.
⑤	10월 7일~ 10일	* 春塘臺에서 親臨觀武才를 시행함. * 慕華館에서 命官觀武才를 시행함.
⑥	10월 10일	* 春塘臺에서 儒生庭試를 시행함. * 문과 급제자 5명과 무과 급제자 50명을 선발하여 放榜함.

〈표 4〉의 일정을 보면 관무재는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訓練院과 慕華館 등에서 初試를 시행하는 단계로, ④의 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의 초시는 閑散武士 이외에도 堂上武臣·堂下武臣·各廳軍官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禁衛營·御營廳·訓練都監의 軍兵과 禁軍 등은 해당 軍門에서 각각 試取하였다.⁹⁵⁾ 이때 전자의 閑散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초시는 閑散初試나 閑良初試로, 후자의 각 軍門에서 시행하는 초시는 各軍門初試로 구별하여 불렀다.⁹⁶⁾ 이 초시에서 入格한 사람들을 병조와 각 軍門에서 別單으로 작성하여 영조에게 보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춘당대와 모화관에서 각각 親臨觀武才와 命官觀武才를 시행하는 단계로, ⑤의 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의 科試에는 초시에서 합격한 사람과 초시를 면제받은 사람이 응시하였다. 관무재의 終日인 ⑥의 10월 10일에는 한편에서는 관무재를 시행하고 한편에서는 유생정시를 시행해서 及第者를 확정하여 放榜하였다. 이때 유생정시에서는 壯元 李明坤을 비롯하여 宋翼輝, 權煥, 李耆齡, 柳綽 등 5명이 급제하였고, 관무재에서는 壯元

95)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25일 정유.

96)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9월 27일 기해, 30일 임인, 10월 7일 기유.

金義叔을 비롯하여 50명이 급제하였다.⁹⁷⁾ 그런데 이때 ⑤와 ⑥의 관무재를 복시나 전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때의 관무재는 무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실마리를 다음 사례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③ “親臨하여 관무재를 시행할 경우 文科는 곧바로 出榜하고 원래 殿試가 없지만, 武科는 각종 試記 안에 ‘直赴殿試’라고 적은 찌지를 붙여서 判下받은 사람들을 즉시 그날로 으레 다시 시험 보여 甲科, 乙科, 丙科를 정한 뒤 榜目を 작성하여 啓下받고 나서야 紅牌를 작성하고 이어서 放榜을 행하였습니다.”⁹⁸⁾

④ “전에 春塘臺에 親臨하여 관무재를 시행할 때 그날 唱榜하게 되면, 관무재에 入格한 閑良 중 ‘直赴殿試’라고 적은 찌지를 붙인 사람들을 試官이 分數의 차례대로 뽑아서 試冊에 써서 들고 다시 殿試를 시행하여 甲科, 乙科, 丙科를 정한 뒤 榜目を 작성하여 啓下받고 나서야 榜目の 차례에 따라 紅牌를 작성하여 御寶를 찍고 이어서 放榜하는 것이 본래 규례입니다.”⁹⁹⁾

③과 ④의 사례에서는 관무재의 급제자를 선발하여 방방하기까지의 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入格한 閑良 중 試記 안에 ‘直赴殿試’라고 적은 찌지를 붙여서 判下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을 보여 甲科, 乙科, 丙科를 정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入格한 閑良 중 殿試에 直赴할 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 坐次를 정한 사례는 ③과 ④ 이외의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¹⁰⁰⁾ 두 번째는 武科榜目を

97)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10일 입자.

98) 『승정원일기』 영조 2년 3월 3일 을미. “親臨觀武才文科, 則直爲出榜, 元無殿試, 武科, 則各樣試記中, 以直赴殿試付標判下之人, 卽於其日, 例爲更試, 定其甲, 乙, 丙科, 榜目啓下, 始書紅牌, 仍行放榜.”

99) 『승정원일기』 영조 4년 6월 3일 무오. “在前春塘臺親臨觀武才時, 或卽日唱榜, 則以觀武才入格閑良中直赴殿試付標人, 自試官分數次第抄出, 試冊書入, 更爲殿試, 以定甲, 乙, 丙科次, 而榜目啓下, 然後紅牌, 依榜目第次書填安寶, 仍爲放榜, 自是規例.”

100) 『승정원일기』 숙종 8년 4월 10일 정해, 영조 10년 9월 27일 기해, 30일 임인.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려 啓下받은 뒤 紅牌를 작성하여 御寶를 찍는 단계이다.¹⁰¹⁾ 세 번째는 放榜을 거행하는 단계이다. ①에서 ‘龍榜과 虎榜을 갖추면 그날로 放榜한다.’라고 하였으므로, 紅牌가 작성되고 나면 관무재 전사에서 선발된 급제자에게 紅牌 등을 수여하는 의식인 放榜을 거행하였던 것이다.

그중 첫 번째 단계는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초사에서 入格한 사람과 초시를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試取하여 入格者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入格者 중에서 ‘直赴殿試’하도록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試取하여 좌차를 정하는 과정이 있다. ③과 ④에서 뒤의 과정은 전시라고 하였으나, 앞의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앞의 과정을 전시와 구별하여 복시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뒤의 과정과 함께 전시로 이해할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①의 규정에 의거한다면, 관무재에서 殿試에 直赴할 자격을 주는 시험은 관무재 覆試이므로 ‘直赴殿試’할 사람을 선발한 시험은 관무재 복시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入格한 한량은 관무재 복시에 합격한 한량을 가리키고, 관무재 복시에서 入格한 閑良 중 殿試에 直赴할 자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행한 시험은 관무재 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승정원일기』와 『시에등록』에는 관무재의 복시를 언급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¹⁰²⁾ 관무재의 복시를 시행하였다면 복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수는 없다. 더구나 관무재의 전시와 별도로 복시를 시행하였다면 복시의 길일을 잡은 기사가 남아 있어야 하나, 『승정원일기』에는 관무재 복시의 길일을 잡은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무

101) 紅牌는 教旨라는 이름으로 발급하였다. 教旨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을 除授할 때, 관직이나 諡號를 追贈할 때, 노비나 전답을 하사할 때 발급하였는데, 이런 경우의 교지에는 어보로 施命之寶를 찍었다. 그러나 大科의 及第者에게 발급하던 紅牌와 小科의 入格者에게 발급하던 白牌에는 科擧之寶를 찍었다. 이러한 교지는 科試教旨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하-국왕의 하달문서-, 은대사랑, 2021, 129~144쪽.

102) 다만 『승정원일기』의 전후 문맥으로 보아 관무재나 별시제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할 때 초시를 마치고 會試를 시행하였다고 추정하게 해주는 사례는 두 차례 확인된다. 영조 4년 5월 25일 을해, 10년 10월 26일 무진.

재 초시를 마치고 시행하던 친림관무재와 명관관무재는 及第者를 배출하던 과시라는 점에서 전시라고 보아야 할 듯하다. 다만 이때의 전시를 兼殿試로 볼 수는 있을 듯하다. 庭試나 別試 등을 시행할 때 초시와 전시로 나누어 시행하거나 ‘초시 없는 전시[無初試殿試]’를 시행하거나 ‘초시를 면제한 전시[除初試殿試]’를 시행할 경우에는 회시를 겸한 전시를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전시를 兼殿試라고 불렀다.¹⁰³⁾ 특히 영조는 ‘京軍은 會試가 없이 坐次를 정하기만 하니, 이것이 바로 兼殿試이다.’라고 하였다.¹⁰⁴⁾

친림관무재와 명관관무재를 전시라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승정원일기』와 『시에등록』 등의 사료에 친림관무재와 명관관무재를 복시라고 말한 사례는 없으나 전시라고 말한 사례는 보인다는 점이다. ③과 ④에서는 첫 번째 단계 중 뒤의 과정만을 전시로 표현하고 있으나, 다른 자료에서는 친림관무재와 명관관무재 전체를 殿試로 표현하고 있다.¹⁰⁵⁾ 둘째, 관무재의 복시와 전시를 나누어서 시행했다면 별도의 길일을 잡아서 시행해야 하지만 관무재 복시의 길일을 별도로 잡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관무재의 복시와 전시를 나누어서 시행하지 않았다면 급제자를 배출하는 과시인 친림관무재와 명관관무재는 전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친림관무재는 친림하여 시행하는 관무재 전시이고 명관관무재는 명관을 임명하여 시행하는 관무재 전시인 것이다.

관무재의 대거시로 문신정시를 시행할 때의 관무재는 무과가 될 수 없으므로 『속대전』의 규정대로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관무재의 초시를 마치고 이어서 시행한 科試를 명백하게 복시라고 표현한 사례는 『승정원일기』에서 확인하지 못하였고, 會試라고 표현한 사례는 몇 차례 확인하였다.¹⁰⁶⁾ 정조 2년(1778)에 시행한 관무재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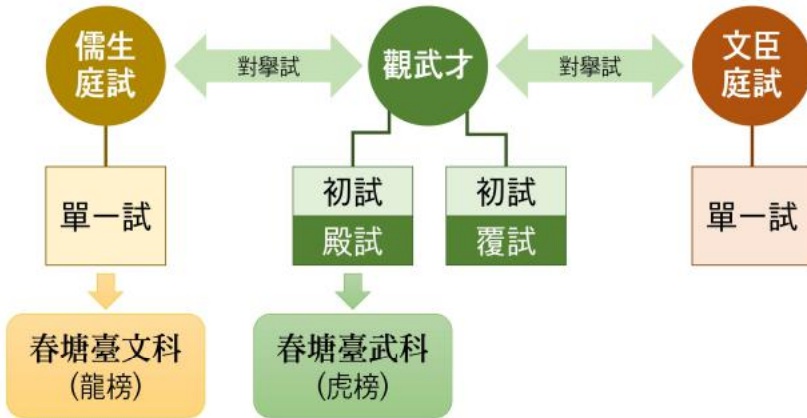
103) 『銀臺便攷』 「禮房攷」〈庭試〉, 「兵房攷」〈別試〉; 『銀臺條例』 「禮攷」〈庭試〉·〈謁聖試〉·〈宗科庭試〉·〈耆老科〉, 「兵攷」〈庭試〉·〈耆老科〉.

104)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9월 8일 정미.

105)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0월 8일 경술, 22년 7월 20일 갑인, 27년 9월 6일 기사, 정조 13년 10월 22일 갑술, 11월 3일 을유.

거시로 문신정시를 시행한 경우이지만, 이때의 친림관무재와 명관관무재는 대부분 전시로 표현하고 있다.¹⁰⁷⁾ 그러나 이때의 친림관무재에서도 무과의 급제자를 선발하지 않고 한량에게는 전시에 직부할 자격을 주고 무신과 출신에게는 관직에 제수하거나 가자하였다.¹⁰⁸⁾ 그런 점에서 문신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할 때의 관무재는 『속대전』의 규정대로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관무재의 대거시로 어떤 科試가 시행되는지에 따라 춘당대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觀武才의 對學試와 春塘臺試

앞의 장에서 『국조방목』에 춘당대시로 수록되어 있으나 『시예등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11회의 科試가 춘당대시인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11회 중 무과의 기록이 없는 ❶과 춘당대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❷, ❸, ❹을 제외하면, 나머지 7회의 무과는 정시, 관무재, 별시제로 시행되었고, 그중 정

106)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2월 27일 을해, 3월 20일 무술, 정조 2년 9월 6일 임진.

107) 『승정원일기』 정조 2년 9월 6일 임진, 8일 갑오, 9일 을미, 17일 계묘.

108) 『승정원일기』 정조 2년 9월 19일 을사.

시가 4회, 관무제가 2회, 별시제가 1회였다. 이때의 정시는 慶科庭試나 重試 對舉庭試도 아니고 文臣庭試나 儒生庭試도 아니므로, 이들 정시와 구별하고 문과와 무과를 아우르는 의미에서 春塘臺庭試로 부르기로 하였다. <표 1>을 춘당대문과와 춘당대무과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國朝榜目』에 수록된 春塘臺試 文科와 武科의 분류(출전: 『國朝榜目』)

	시행 시기	春塘臺文科	春塘臺武科	번호
선조	5년 3월 10일	유생정시	不明	❶
효종	5년 3월 11일	유생정시	관무제	❷
	6년 4월 11일	유생정시	관무제	❸
현종	5년 4월 13일	유생정시	관무제	❹
	14년 3월 26일	유생정시	관무제	❺
숙종	6년 6월 8일	춘당대정시문과	춘당대정시무과	❻
	8년 4월 18일	유생정시	관무제	❼
	12년 4월 5일	춘당대정시문과	춘당대정시무과	❽
	18년 8월 11일	유생정시	관무제	❾
	24년 9월 11일	不明	不明	❿
	26년 9월 2일	유생정시	관무제	⓫
	30년 9월 3일	춘당대정시문과	춘당대정시무과	⓬
	36년 8월 9일	유생정시	관무제	⓭
영조	45년 10월 1일	유생정시	관무제	⓮
	4년 5월 29일	유생정시	별시제	⓯
	10년 10월 10일	유생정시	관무제	⓰
	20년 3월 25일	유생정시	관무제	⓱
	22년 7월 24일	유생정시	관무제	⓲
	24년 3월 25일	춘당대정시문과	춘당대정시무과	⓳
	25년 3월 16일	不明	不明	⓴
	27년 2월 18일	不明	不明	⓵

<표 5>에서 무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❶, 알성시인지 춘당대시인지 명

확하지 않은 ⑩과 ⑫, 경과정시인지 춘당대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⑭을 제외하면, 나머지 17회의 춘당대무과는 관무재가 12회<70.6%>, 춘당대정시무과가 4회<23.5%>, 별시재가 1회<5.9%>이다. 이러한 수치는 춘당대무과가 관무재로 시행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춘당대무과는 모두 관무재로 시행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춘당대무과는 관무재, 춘당대정시무과, 별시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명목에 따라 서로 다른 科試의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법전에 춘당대무과를 별도로 수록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사정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나 춘당대정시문과로 시행되더라도 모두 법전에 수록된 춘당대문과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였으나, 춘당대무과는 다양한 명목으로 시행하고 그 명목에 따라 시행 규정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특정 科試의 규정을 기준으로 춘당대무과를 수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무재는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고 원래 전시가 없는 科試였으나, 용방과 호방을 갖출 경우에는 복시를 대신하여 회시를 겸한 전시를 시행하였다. 즉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할 경우에는 관무재는 춘당대무과가 되고 유생정시는 춘당대문과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관무재의 대거시로 문신정시를 시행하면 관무재는 무과가 되지 못하고 복시에서 선발된 사람에게는 전시에 직부할 자격 등을 주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관무재를 곧바로 춘당대무과라고 말할 수 없었다. 결국 관무재의 대거시로 어떤 科試를 시행하느냐에 따라 관무재의 성격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춘당대정시무과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가 시행될 때의 무과도 아니고 慶科庭試나 重試對舉庭試도 아닌 정시를 시행할 때의 무과를 가리켰다. 일반적으로 춘당대시는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가 시행될 때 그 유생정시와 관무재를 각각 춘당대문과와 춘당대무과로 불렀으나, 국가의 경사나 重試와는 관계없이 국왕의 명으로 특별히 춘당대에서 정시를 시행하면서 문과와 무과를 함께 시행할 경우에도 각각 춘당대문과와 춘당대무과로 불렀다. 이러한 정시를 앞의 장에서 춘당대정시로 불렀다.

別試才는 別試射라고도 하였으며, 관무재와 유사하면서도 규모가 작은 科試였다.¹⁰⁹⁾ 별시재는 국왕의 특별 지시에 따라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거나 초시가 없는 단일시로 시행하였다.¹¹⁰⁾ 따라서 별시재는 전시가 없었으므로 별시재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전시에 직부할 자격을 주었을 뿐이었다.¹¹¹⁾ 그리고 별시재는 관무재와 달리 유생정시나 문신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¹²⁾ 그런 점에서 보면 별시재는 관무재보다는 작은 규모로 시행되던 科試로, 관무재와 비교하여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다. 첫째, 초시와 복시를 반드시 시행하는지의 여부이다. 관무재는 반드시 초시와 복시로 나누어 시행하였으나, 별시재는 초시를 시행할지의 여부를 물어서 정하였다. 즉 별시재는 초시 없이 단일시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둘째, 對擧試를 반드시 시행하는지의 여부이다. 관무재는 반드시 대거시로 文臣庭試나 儒生庭試를 돌아가며 시행하였으나, 별시재는 일반적으로 대거시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전시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관무재는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면 전시를 시행하여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나, 별시재는 전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제자를 배출할 수 없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 1>과 <표 5> ⑤의 춘당대무과를 별시재로 본다면, 이때의 별시재는 일반적인 별시재와는 달리 대거시도 시행하고 전시도 시행한 예외적인 별시재라고 할 수 있다.

⑤의 춘당대무과가 관무재인지 별시재인지 혼선을 빚는 이유는 『승정원일

109) 조선시대의 법전 중에서는 『대전통편』 안에서 별시사라는 이름이 처음 보일 뿐이고, 별시사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전율통보』에는 별시사의 규정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扈衛大將과 扈衛別將이 扈衛軍官을 대상으로 試取하여 그 성적에 따라 전시 또는 회시에 직부할 자격을 주거나 가져하던 科試로, 扈衛廳만의 한정적인 별시사였다. 『만기요람』에는 三軍門의 試藝 안에 관무재와 함께 별시사 또는 별시재라는 이름의 科試가 수록되어 있으나 제도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수록하지 않았다. 별시사의 제도에 대해 그나마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은대편고』이다. 『大典通編』 「兵典」 京官職; 『典律通補』 「兵典」 試取; 『萬機要覽』 「軍政編」 2 訓練都監 試藝; 「軍政編」 3 禁衛營 試藝, 御營廳 試藝; 『銀臺便攷』 「禮房攷」 別試射.

110) 『銀臺便攷』 「禮房攷」 別試射; 『萬機要覽』 「軍政編」 2 訓練都監 試藝, 「軍政編」 3 禁衛營 試藝, 御營廳 試藝.

111) 『승정원일기』 현종 9년 9월 3일 기해, 숙종 10년 6월 9일 계묘, 영조 29년 2월 7일 기사.

112)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8월 9일 갑술, 영조 12년 5월 2일 을미, 25년 2월 14일 임진.

기』에 그때의 과시를 관무재로 기록하기도 하고 별시재로 기록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초시에 합격한 사람과 초시를 면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시가 시행된 그해 5월 27일과 28일의 기사에는 모두 ‘주상이 춘당대에 나아갔다. 관무재를 시행하는 자리에 입시할 때 ……」라고 기록되어 있으나,¹¹³⁾ 영조가 관무재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별시재로 시행하도록 한 일,¹¹⁴⁾ 영조의 명에 따라 예조가 별시재의 길일을 올려 5월 27일로 정한 일,¹¹⁵⁾ 영조와 신하가 주고받은 문서에서 그 당시의 과시를 별시재로 부른 일,¹¹⁶⁾ 별시재는 對舉試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줄로 알았다가 나중에 예조가 기묘년(1699, 숙종 25)과 갑신년(1704, 숙종 30)에 별시재를 시행할 때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한 전례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근거로 유생정시를 시행하도록 한 일,¹¹⁷⁾ 실제로 5월 29일에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일¹¹⁸⁾ 등을 참고하면, 이때의 과시가 별시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조가 기묘년(1699, 숙종 25)과 갑신년(1704, 숙종 30)에 별시재를 시행할 때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한 전례가 있다고 보고한 것은 사실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묘년의 별시재는 숙종 25년(1699) 8월 8일에 숙종의 명으로 8월 14일에 시행되었다.¹¹⁹⁾ 그때 예조가 숙종에게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나 문신정시를 시행할지 물었으나 숙종이 시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¹²⁰⁾ 갑신년의 별시재는 숙종 30년(1704) 8월 3일에 숙종이 비망기를 내려 춘당대정시를 시행하도록 명하면서 정시가 끝난 뒤에 무과의 초시를 면제해 준 사람을 대상으로 정시와는 별도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¹²¹⁾ 그에 따라 그해 9월 3일에 춘당대시의 문과와 무과를 시행하고 이어

113)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27일 정축, 28일 무인.

114)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15일 을축.

115)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15일 을축.

116)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16일 병인, 18일 무진, 25일 을해.

117)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16일 병인, 28일 무인.

118) 『승정원일기』 영조 4년 5월 29일 기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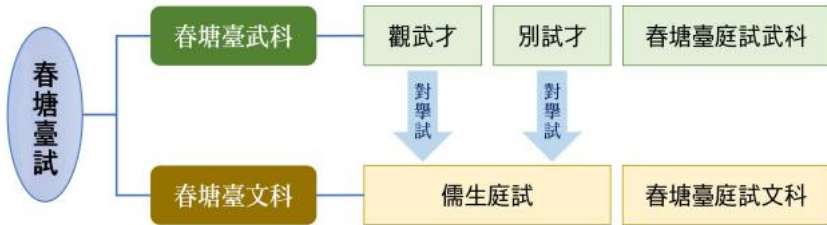
119)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8월 8일 계유, 13일 무인.

120) 『승정원일기』 숙종 25년 8월 9일 갑술.

121) 『승정원일기』 숙종 30년 8월 3일 경오.

서 별도로 별시재를 시행하였다. 이때의 춘당대시가 <표 1>의 ㉒이다. 그렇다면 숙종 25년과 30년에는 별시재를 시행할 때 유생정시를 대거시로 시행한 일이 없었다. 따라서 영조 4년(1728)에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유일하게 별시재 및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춘당대시가 『국조방목』에 수록되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춘당대시의 운영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春塘臺試의 운영

IV. 맺음말

본고는 春塘臺試가 大科의 하나이지만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春塘臺文科만 수록되어 있고 春塘臺武科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법전에 觀武才는 武科의 일종으로 수록되어 있고 殿試의 규정도 수록되어 있으며, 관무재의 對舉試로 文臣庭試나 儒生庭試를 차례로 돌아가면서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중 이미 文科에 及第한 문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문신정시는 춘당대문과와 별도로 법전에 수록되어 있으나, 아직 급제하지 못한 儒生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생정시는 법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관무재를 시행할 때 龍榜과 虎榜을 갖추면 선발된 사람에

계는 급제를 인정하여 放榜을 거행하였다. 용방은 文科榜目を 가리키고 호방은 武科榜目を 가리켰다. 법전의 이러한 기록들을 참고해 볼 때, 관무재는 춘당대무과를 가리키고 관무재의 대거시 중 유생정시는 춘당대문과를 가리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론에서 살펴본 대로 춘당대시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다. 하나는 관무재나 별시재를 시행할 때 유생정시를 그 대거시로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런 때에는 유생정시가 춘당대문과가 되고 관무재나 별시재가 춘당대무과가 되었다. 또 하나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舉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문과와 무과로 나누어 시행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정시를 春塘臺庭試라고 불렀다.

『國朝榜目』에는 총 21회의 춘당대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다른 榜目 및 『試藝臚錄』·『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와 대조한 결과 춘당대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3회이고, 춘당대시로 확인된 것이 18회이며, 18회 중 1회는 무과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18회의 춘당대문과는 유생정시로 시행된 것이 14회<77.8%>이고 춘당대정시문과로 시행된 것이 4회<22.2%>였다. 17회의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로 시행된 것이 12회<70.6%>이고, 춘당대정시무과로 시행된 것이 4회<23.5%>이며, 별시재로 시행된 것이 1회<5.9%>였다.

이러한 결과는 춘당대시의 운영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춘당대문과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경우와 춘당대정시의 문과를 시행한 경우로 나뉘었다. 유생정시는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되는 경우 이외에 단독으로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유생정시라야 춘당대문과가 되었다. 반면에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로 시행된 문신정시는 이미 문과에 급제한 문신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科試이기 때문에 춘당대문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춘당대정시문과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舉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시행할 때의 문과를 가리켰다.

춘당대무과는 관무재로 시행된 경우, 별시재로 시행된 경우, 춘당대정시의

무과로 시행된 경우로 나누었다. 관무재는 『속대전』에 무과의 일종으로 수록되어 있으나, 관무재를 시행했다고 해서 모두 무과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속대전』에서는 관무재가 무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龍榜과 虎榜을 갖춘 경우’라고 하였다. 관무재를 시행할 때에는 유생정시나 문신정시를 돌아가면서 대거시로 시행하였는데, ‘龍榜과 虎榜을 갖춘 경우’란 관무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여 文科榜目과 武科榜目이 갖추어진 경우를 가리켰다. 즉 이런 경우에는 유생정시를 춘당대시의 문과로, 관무재를 무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관무재의 대거시로 어떤 정시가 시행되느냐에 따라 관무재의 성격이 달라지고 춘당대시의 성립 여부도 정해졌다. 별시재는 관무재에 비해 간소하게 시행되던 과시로, 대부분 대거시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조 4년(1728)에는 예외적으로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숙종 대에 별시재의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한 전례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시행한 것이었다. 춘당대정시무과는 慶科庭試나 重試의 對舉庭試도 아니고 관무재나 별시재의 대거시도 아닌 정시를 춘당대에서 시행할 때의 무과를 가리켰다. 춘당대무과는 이처럼 다양한 명목으로 시행되고 그 명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춘당대무과’라는 이름으로 수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춘당대시는 『국조방목』에 ‘春塘臺榜’으로 수록된 21회로 한정하였다. 그 21회는 선조 5년(1572)부터 영조 27년(1751) 사이에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조 28년 이후로는 춘당대시가 시행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승정원일기』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영조 28년 이후에도 관무재 및 그의 대거시인 유생정시를 시행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조 13년(1789)에 思悼世子の 무덤인 楊州의 永祐園을 水原으로 옮기고 顯隆園으로 이름을 변경한 뒤 당시 고생한 將校와 武士들을 위로하기 위해 관무재를 시행하고 그 대거시로 유생정시를 시행하였다.¹²²⁾ 그렇다면 그

122) 『승정원일기』 정조 13년 10월 9일 신유, 11월 3일 을유; 『일성록』 정조 13년 11월 4일 병술.

때의 유생정시와 관무제도 춘당대시라고 할 수 있다.¹²³⁾ 그런데 『국조방목』에는 그 科試를 ‘親臨春塘臺別試文科榜’으로 기록하고 있다.¹²⁴⁾ 즉 춘당대시가 아닌 別試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승정원일기』에는 그 당시에 별시를 시행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국조방목』에 춘당대시를 다른 이름의 科試로 수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영조 28년 이후의 춘당대시에 대해서도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를 참고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투고일 : 2023.04.29. / 심사일 : 2023.05.19.~2023.06.18. / 심사완료일 : 2023.06.18.

123) 『武科總要』에는 이때의 과시를 ‘春塘臺親臨靈駕陪從將士觀武才庭試’라고 수록하였다. 『武科總要』 卷3.

124) 『國朝榜目』 卷18 正宗朝.

■ 참고문헌

사료

- 『國朝榜目』,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國朝文科榜目』,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新唐書』,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上海人民出版社·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2.
- 『大典通編』,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 『陶谷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萬機要覽』,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
- 『武科總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續大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試藝臚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與猶堂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燃藜室記述』,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王世子冊封慶龍虎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六典條例』,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 『銀臺便攷』,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 『日省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典律通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
- 『庭試文科榜』,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
- 『增補文獻備考』,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春官通考』,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시대법령자료(<https://db.history.go.kr/>).
- 『弘齋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단행본

-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하 - 국왕의 하달문서 -, 은대사랑, 2021.
- 이성무, 개정증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논문

박현순, 「國朝文科榜目の 편찬과 18세기 '인물정보학」, 『규장각』 56, 2020.

심승구, 「조선전기의 관무재 연구」, 『향토서울』, 65, 2005.

오셋별, 「동궐 후원 춘당대의 형성과 기능」,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상무, 「관무재 대거 정시 운영 연구『시예등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42-1, 2020.

최두진, 「춘당대가 지니는 시험장소로서의 역사적 변화 고찰」, 『역사교육사학』 41-2, 2019.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Chundangdaesi* and *Yusaengjeongsi* · *Gwanmujae*

Lee, Kang-wook*

Chundangdaesi was part of a higher examination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but only *chundangdae mungwa* was included in the Code of Rites, whereas *chundangdae mugwa* was not part of the Code of Military. *Chundangdaesi* operated in two types. First, when practicing *gwanmujae* or *byeolsijae*, *yusaengjeongsi* was conducted as a *daegeosi* of them, and here, *yusaengjeongsi* represented *chundangdae mungwa*, while *gwanmujae* or *byeolsijae* represented *chundangdae mugwa*. Second, *jeongsi*, neither as a *daegeojeongsi* of *gyeonggwajeongsi* or *jungsi* nor a *daegeojeongsi* of *gwanmujae* or *byeolsijae*, took place at *chundangdae* being divided into civil service and military exams, which was referred to as *chundangdae jeongsi*.

The Roster of Examination Graduates records a total of 21 *chundangdaesi* exams. When compared to other rosters and sources such as *Siyedeungnok* and *Diary of the Royal Secretariat*, it was unclear whether three of these exams were classified as *chundangdaesi*. However, 18 exams were confirmed as *chundangdaesi*, and out of these 18, one did not include the military exam. Among the 18 *chundangdae mungwa* exams, 14 <77.8%> were practiced in the form of *yusaengjeongsi*, while 4 <22.2%> were conducted as *chundangdae*

* Representative of Eundae Education Center.

jeongsi mungwa. Regarding the 17 *chundangdae mugwa* exams, 12 <70.6%> were practiced in the form of *gwanmujae*, 4 <23.5%> as *chundangdae jeongsi mugwa*, and 1 <5.9%> as *byeolsijae*.

Chundangdae mungwa encompassed two cases : when it was conducted as *yusaengjeongsi*, which served as a *daegeosi* of *gwanmujae* or *byeolsijae*, and when it was conducted as *chundangdae jeongsi*. *Yusaengjeongsi* was often implemented independently, but it could only be considered *chundangdae mungwa* when practiced as a *daegeosi* of *gwanmujae* or *byeolsijae*. *Chundangdae jeongsi mungwa* referred to a *jeongsi mungwa* conducted at *chundangdae*, neither as a *daegeojeongsi* of *gyeonggwajeongsi* or *jungsi* nor a *daegeojeongsi* of *gwanmujae* or *byeolsijae*.

Chundangdae mugwa had three distinct cases : when it was practiced as *gwanmujae*, as *byeolsijae*, and as the military exam of *chundangdae jeongsi*.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Code*, the requirement for *gwanmujae* to become a military exam was ‘to be equipped with *yongbang* and *hobang*.’ *Gwanmujae* was operated in rotation of *daegeosi* for *yusaengjeongsi* and *munsinjeongsi*, and the term ‘to be equipped with *yongbang* and *hobang*’ referred to cases where both the civil service and military exam rosters were well-prepared upon the performance of *yusaengjeongsi* as *daegeosi* of *gwanmujae*. In Comparison to *gwanmujae*, *byeolsijae* was a simplified form of examination, and most of them did not conduct *daegeosi*. An interesting exception occurr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where *yusaengjeongsi* was conducted as *daegeosi* of *byeolsijae*. However, this occasion was based on a misconception that there had been a precedent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Chundangdae jeongsi mugwa* referred to a *jeongsi mugwa* conducted at *chundangdae*, separate from being a *daegeojeongsi* of *gyeonggwajeongsi* or *jungsi*, or a *daegeojeongsi* of *gwanmujae* or *byeolsijae*. This suggests that *chundangdae mugwa* was not included in the law code under a singular article due to its complex nature and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rules to it.

Keywords : chundangdaesi, gwanmujae, byeolsijae, yusaengeongsi, munsinjeongsi, daegeosi, yongbang, hobang